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9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## 2. 제안이유

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위해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 명시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6조, 제17조)
- 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구체화(안 제8조)
- 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노인, 청소년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9조제2항)
- 라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(안 제9조제5항)

- 마.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참여예산 주민제안 검토 및 심사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우선 검토를 보장(안 제9조의3 신설)
- 바.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 규정 삭제(현행 제13조제3항 단서 삭제)
- 사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“예산담당부서장”에서 “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변경(안 제14조제1항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6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은
  - 안 제1조, 제3조, 제4조 등에서는 2020년 3월에 개정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참여 보장을 확대하였고
  - ※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“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·방법” 예시에 「사업제안 → 사업선정 → 예산편성 → 예산집행 → 예산결산」이라고 표현하고 있음.

-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함.
  - ※ 제8조제3호 신설은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나열한 것이며, 현재 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있음.
  - ※ 제8조제4호 지방의회에 주민의견서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<sup>1)</sup>의 의무사항임.
-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노인, 청소년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
-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현행 위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회로 운영하고자 부칙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.
- 안 제9조의3에서는 주민제안 검토 및 심사 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의 우선 검토를 명시함.
- 안 제13조제3항의 단서 규정인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 규정을 삭제함.
  - ※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함.
-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편성, 집행, 모니터링 등 예산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약자, 청년 등 다양한 주민의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참여예산의 공공복리 증진 기여를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판단됨.

1)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-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-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며, 정보 격차나 소득 수준 등으로 인해 소외계층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,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**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18. 3. 27., 2021. 1. 12.>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7.>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3., 2017. 7. 26.,

2018. 3. 27.>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7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

## 지방재정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. 7.] [대통령령 제35186호, 2025. 1. 7., 일부개정]

**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)**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3. 3.>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2. 설문조사
3. 사업공모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.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.>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2.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3.>

[제목개정 2020. 3. 3.]